

(재)구미시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구 미 시

(재)구미시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16. 9.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지역 우수인재 및 명문학교 육성을 통한 최상의 교육환경 조성
으로 교육 명품도시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우수인재의
역외유출 방지 및 미래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인적자원 창출을
위하여 2008년 8월 (재)구미시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지역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2016 회계연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재)구미시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재)구미시장학재단

- 대 표 : 남유진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 출연예정액 : 5,000,000천원

나. 주요 사업

(1) 사 업 명 : 우수인재 육성 장학기금 조성

(2) 사업기간 : 2008년부터

(3) 사업장소 : 구미시 송정대로 55, 총무과

(4) 사업내용

- (재)구미시장학재단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매년 장학기금의
이자수익에 한하여 장학생 선발 및 지급
- 2017년 장학생 선발계획 : 190명, 3.1억원 지급예정
 - ▶ 고등학생 : 진학우수/성적우수/고교특기장학금 지급
 - ▶ 대 학 생 : 진학우수/성적우수/기회균등/예체능특기 장학금 지급

다. 출연의 필요성

- (1) 최고의 첨단 산업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교육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고급 산업인력이 찾아오는 교육정주 여건을 갖추
으로서 구미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인적자원을 창출하고자 2008년 구미시장학재단을 설립함.
- (2) (재)구미시장학재단은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 수익
으로 2011년도부터 장학생 선발 사업을 시작하였고, 매년
상반기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16년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93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7억 2천 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음.

- (3) 장학기금 조성 규모가 커질수록 이자수익 증가에 따라 장학금 지급 가능액이 증가하므로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장학기금 규모 확대를 통하여 지역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인재육성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3)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기금 출연) 시장은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
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김 종 율
	담 당	강 호 근
	담 당 자	배 수 정 (480-6783)